

식량자원과학과 대학원 입학전형 및 종합시험 내규세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대학원 식량자원과학과 및 응용생물과학과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전형 (제2조-제8조, 제16조 및 제17조) 및 종합시험 (제9조-제17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 응시절차) 대학원 식량자원과학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본교 일반대학원의 선발시기에 식량자원과학과 사무실에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전형 응시 관련 서류) 응시자는 대학(석사과정), 대학 및 대학원(박사과정) 성적관련 서류 및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한 학업 및 연구계획서를 응시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형위원) 전형위원은 식량자원과학과의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하여, 3인의 위원을 선정한다.

제6조(입학전형방법) 대학원 입학전형은 서류 및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상기 제4조 대학/대학원 성적 및 학업/연구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시하며, 구술시험은 전공지식 및 학문에 대한 열정등의 항목을 검토하여 실시하며, 세부적으로 식량자원과학과 전임교원의 합의에 따라 산출된 학과 “대학원 일반전형 면접고사 배점 기준표”(별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제7조(입학전형 시험시기) 식량자원과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 입학전형은 본교 일반대학원의 일반전형 시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8조 (입학전형 배점기준) 대학원 입학전형의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은 이하의 표에 기재된 사항을 따라 시행한다.

대학원 일반전형 면접고사 배점기준표

번호	평가항목	세부기준	점수	배점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0~10점)	동일 및 유사전공 95점/100점이상	10	10
		동일 및 유사전공 90점/100점이상	9	
		동일 및 유사전공 85점/100점이상	8	
		동일 및 유사전공 80점/100점이상	7	
		동일 및 유사전공 79점/100점이상	6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0~20점)	대학원생으로서의 전공지식, 전공용어, 표현력 등 사용 여부	상: 20	20
			중: 15	
			하: 10	
3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0~25점)	① 전공관련 기초지식 평가 ② 세부전공 관련 지식 평가 ③ 학위논문 실험 수행능력 등	A: 25	25
			B: 20	
			C: 15	
4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0~20점)	① 전공학문에 대한 열의(열정) ② 전공에 임하는 자세 및 진지성 등	상: 20	20
			중: 15	
			하: 10	
5	해당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0~25점)	① 출신대학	A 등급: 5	25
			B 등급: 4	
			C 등급: 3	
		① 전공 졸업생 우선 ② 연구 및 교육경력 등 경력사항 ③ 대학원생으로서의 예의범절 등	상: 20	
			중: 15	
			하: 10	
총점				100

□ 출신대학(학사학위)

구분	학 교 명	배점
A 등급	건국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KAIST, 광주과기대	5
B 등급	순천향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4
C 등급	그 외 학점은행제 대학(독학사)	3

*출신대학 등급은 한시적으로 정한다.

제9조(종합시험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시험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의 지정시기 (매년 2월 또는 8월)에 식량자원과학과 사무실에 종합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시험과목)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선정교과목에 대하여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기기준을 설정하여 출제하도록 한다.

제12조(종합시험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종합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식량자원과학과의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14조(종합시험 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종합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16조(입학전형 및 종합시험 내규 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7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